

[별표 1] <장학금의 종류별 지급대상 및 지급액>

장학금의 종류		지급대상		지급액
성적우수 장학생	전체수석	입학성적 최우수자 (매 학기 B 이상이어야 함)		등록금 전액(전학년)
	A	학과성적(입학성적)수석자		등록금 전액
	B	학과성적(입학성적)차석자		등록금의 50% 이상
	C	학과별 지급가능 인원 내 평점(입학성적)순 (학과장 추천에 의해 선정될 수 있음)		등록금의 30% 이상
※공로장학	학생 자치	A	학생회장	등록금 전액
		B	부학생회장, 대의원회의장 신문사편집국장, 방송사 실무국장	등록금의 60%
		C	학생회 부장, 대의원	등록금의 40%
	운동부	체육부원으로 공로가 인정되는 자		등록금 전액
	기타	A	전국단위 이상 각종 대회(경연)에서 3위 이상 입상	300,000원
		B	도단위 이상 각종 대회(경연)에서 3위 이상 입상	200,000원
보훈장학		관련법에 의한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, 교육지원대상자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C 이상 자(본인은 성적무관)		등록금 전액
북한이탈주민장학		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		등록금 전액
생활보호장학		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해당자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C 이상인 자		등록금 전액
장애학생장학		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		등록금의 60%
		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	등록금의 40%
다문화자녀장학		다문화가정 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C 이상		등록금의 40%
다자녀가구장학		자녀 3인 이상인 가구 (만20세 이하)		등록금의 60%
가족장학		가족 2인 이상 재학 시 1인 (휴학생은 대상에서 제외)		등록금 전액
근로장학		성적이 C 이상인 자(신입생은 입학성적 4분의 3이내)로 교내 및 사회기관(단체) 근로봉사자		국가근로 지급단가
장애도우미장학		장애학생 도우미		국가근로 지급단가
성적향상장학		직전학기 성적 대비 평점 1.0이상 향상자 (향상된 평점 최소 2.5이상)		200,000원
자기계발지원장학		전공 관련 자격 취득, 여학점수 우수자 등 (지급대상 자격증 및 점수 기준은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.)		400,000원 이내
마일리지장학		「마일리지운영지침」에 따라 마일리지취득 점수가 우수한자		장학위원회에서 결정
가계지원장학		모범학생으로 저소득층 자녀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분위에 해당하는 자		장학위원회에서 결정
특별장학		재해, 재난 등 긴급한 가계 곤란으로 지급이 필요하여 장학사정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또는 대학실정 및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		장학위원회에서 결정
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장학금	등록금지원 장학금	보호대상아동 업무협약·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 협약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서 직전학기 성적평점 2.0이상인 자 (신입생은 성적기준 없음)		등록금 전액 지원 (국가장학금 수혜대상자인 경우 국가장학금 우선 수혜)
	기숙사비 지원 장학금			기숙사비 전액 지급
	생활비지원 장학금			월 150,000원×12개월 =1,800,000원(매월 지급)

※ 공로장학(기타A,B)은 체육부원 제외, 학기당 1회만 인정하며 학생에게 유리한 실적을 인정한다.

공동수상의 경우에는 수혜액을 배분하여 지급

※ 학생자치 공로장학은 수업일수 4분의 2를 초과하여 임명된 경우 장학지급 제외함

※ 입학성적 최우수자를 제외한 모든 교내장학금은 해당 학기에 한함.

※ 공로장학(기타), 보훈장학, 생활보호장학, 다문화자녀장학, 다자녀가구장학 등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